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 84호

2015. 8. 24(월)

## 공 고

○ 남원시 조례 제2015-1021호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

회 람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공고 제2015-1021호

남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24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)
- 나.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다.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지킴이 운영 및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- 라. 어린이놀이기구의 예산확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안전재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 : 우55738,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안전재난과
-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47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 문의는 남원시청 안전재난과(전화 063-620-69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붙임 : 남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. 끝.

#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08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안전재난과장

## 1. 제정이유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안 제6조 까지)
- 나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다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지킴이 운영 및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(안 제9 조 및 안 제10조)
- 라. 어린이놀이시설의 예산확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및 안 제 1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 간: 2015. . . ~ 2015. . . (20일간)
    - 결 과:
 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놀이기구”란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, 미끄럼틀, 공중놀이기구,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「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.
2. “어린이놀이기구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 또는 마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기구를 말한다.
  - 가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
  - 나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
  - 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  - 라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
  - 마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  - 바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  - 사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

자.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

차.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

카.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

3. “관리주체”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,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관리감독기관의 지도·감독 등)**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기한을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수리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
- 2. 취사 및 불법 주·정차, 애완동물 동반(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), 쓰레기 무단투기, 노점상 등에 대한 방지대책
  - 3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
  - 4.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·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
  - 5. 모래시설의 정비(교체, 뒤집기, 보충 등)
  - 6.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
  - 7.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응급 연락처, 하자 신고처, 검사 유효기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
-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5조(행위의 제한)**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흡연·음주·가무·방뇨행위
- 2. 개, 고양이,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
- 3. 자동차,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·정차 행위
- 4.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·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
- 5.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
- 6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
**제6조(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)**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, 제15조 및 제20조부터

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시 놀이기구를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.

**제7조(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)**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수당)**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안전감시망 구축)**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“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”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「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업무의 분담)**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

하게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·조정 역할을 한다.

제11조(예산확보 및 지원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,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표창)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(제6조제1항 관련)

1. 안전점검의 항목

- 가. 어린이놀이기구의 연결 상태
- 나. 어린이놀이기구의 노후(老朽) 정도
- 다. 어린이놀이기구의 변형 상태
- 라. 어린이놀이기구의 청결 상태
- 마.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
- 바.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

2. 안전점검의 방법

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,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- 가. 양호 :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(危害)·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
- 나. 요주의 :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·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,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
- 다. 요수리 :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·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, 헐거움,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, 어린이놀이기구가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
- 라. 이용금지 :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·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, 헐거움,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



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